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여 객 자 동 차 운 수 사 업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자동차대여사업의 적용대상을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만 규정하여 특수자동차로 분류되는 캠핑용자동차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소비자의 캠핑용자동차에 대한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자동차대여사업 적용대상에 캠핑용 특수자동차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976호, 2021. 3. 23. 공포, 2021. 9. 24. 시행)됨에 따라 캠핑용 특수자동차에 대한 차령 및 차량충당연한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업무 일부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지원·보조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 구성·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설치(안 제34조)

나. 캠핑용 특수자동차에 대한 차령은 9년, 차량충당연한은 3년으로 함
(안 별표 2, 제40조제4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2021. 4. ~ 5.)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 제목 “(간사 및 서기)”를 “(위원회의 사무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1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에 필요한 회의 운영, 조정절차 지원 및 문서의 처리 등 사무 처리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그 소속으로 위원회 사무국을 두어야 한다.
- ③ 사무국의 조직·인력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40조제4항 중 “승합자동차”를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 한다.

별표 2 제1호에 특수자동차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특수자동차	자동차대여사업용	9년
-------	----------	----

별표 2 제2호가목 본문 중 “승합자동차”를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신 설>	제34조(위원회의 사무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1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에 필요한 회의 운영, 조정절차 지원 및 문서의 처리 등 사무 처리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그 소속으로 위원회 사무국을 두어야 한다. ③ 사무국의 조직·인력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① ~ ③ (생 략) ④ 법 제8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차량충당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은 승용자동차는 1년, <u>승합자동차</u>는 3년으로 한다. ⑤ · ⑥ (생 략)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u>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u>-----. ⑤ · ⑥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819